

자유무역협정 시대 농산업화 사례 연구: 키위 계약생산 사례를 중심으로

The agroindustrialization in the era of Free Trade Agreements: A case of kiwi fruit contract farming*

이 지 수 ** Ji-Soo Yi

목 차

I. 서론	IV. 연구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이 글은 FTA 활용이 우리 농산업화에 갖는 의미를 살피고, 농업분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농산업화의 핵심인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의 계약생산의 실 사례를 살피는 사례연구로서 학문적으로는 FTA 활용에 대한 논의를 농산업화 연구까지 확장하는 의의가 있고, 실천적으로는 우리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FTA로 인해 유발된 경쟁 속에서 농산업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농기업과 농가 간 평등하고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과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주제어> 자유무역협정, 농산업화, 계약생산, FTA 활용

* 본 연구는 교육목적으로 편집되어 2018년 개시 예정인 동일 저자의 한국생산성본부 사이버연수원 동영상 교육, “농축산업과 FTA”의 원고로 사용됐습니다.

** 호서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조교수

I. 서론

농업분야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활용과 특혜의 수혜가 비교적 저조하다. 2016년 우리 수출의 67% 이상이 FTA 체결국으로 이뤄졌고¹⁾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수출에 63% 이상 FTA가 적용돼 수혜를 받았다²⁾. 그러나 2016년 FTA 특혜 대상이 된 전체 수출액 1,368억불 중 농산물 수출 비중은 약 1% 정도인 13억불이었고 이 중에서도 약 50% 만 실제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았다 (관세청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7).

농업분야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호받는 분야의 하나로 FTA 활용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다(Reardon and Barrett 2000). 그러나 1990년대부터 농산업화(agroindustrialization)³⁾가 추진되면서 FTA 활용을 통한 농업분야의 자유화와 세계화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농산업화는 농업분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농업분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전 단계를 산업화하고 세계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FTA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자유화는 필수적인 요소다 (Cook and Chaddad 2000, Daz Bonilla and Reca 2000, Reardon and Barrett 2000, Cook, Reardon et al. 2001).

이 글은 FTA 활용이 우리 농업의 농산업화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농업분야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농산업화의 핵심인 농기업과 지역농가 간의 계약생산(contract farming)⁵⁾의 실 사례를 살펴, FTA가 농산업화와 농업분야의 과제해결에 기여하는 바를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는 FTA 활용에 대한 논의를 농산업화에 대한 연구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실천적으로는 농업분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FTA 활용 확대를 이끌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논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첫째, FTA 활용은 농업분야의 과제 해결과 농산업화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둘째, 농업분야 FTA 활용을 위해

1) 2016년 총 수출액 4,954 억불 중 3,496 억불이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로 전체교역 대비 FTA 교역의 비중은 67.8% 이다 (관세청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7).

2) FTA 활용은 FTA 적용이 가능한 수출입 금액에서 FTA 특혜관세를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의 비율로 측정한다. 2016년 전체 산업에서 수출에 대한 FTA 활용율은 평균 63.8%이다 (관세청 □ 국제원산지정보원, 2017).

3) 농산업화에 대한 정의는 II. 이론적 배경 참조.

4) 세계화(globalisation)란 각 국가 경제사회 주체들의 활동범위가 국가를 초월하여 확대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상호간밀성이 증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5) 계약생산(contract farming)의 정의와 형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2. 참조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가? 셋째, 농업분야 FTA 활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며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계약생산 사례를 다뤘다. 이 사례는 계약생산을 통해 농산업화의 진전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농업분야 과제해결과 농산업화에 FTA 활용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됐다. 본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우리 농업분야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해보겠다. 이어 대안으로써 제기된 농산업화와 계약생산, 그리고 FTA활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FTA 활용이 농업의 과제해결과 농산업화에 유용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주장한다.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론적 분석틀을 구성하고 이론적 주장과 사례의 패턴이 일치하는지 분석한다⁶⁾.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업분야에서 FTA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농업분야의 현황과 과제

급격한 경제성장과 세계화 속에서 우리 농업구조는 빠르게 변했다. 농업생산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7%로 감소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유럽의 5개국 평균이 117년, 미국 92년, 일본 73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단 26년이었다(김정호, 2007). 이 과정에서 우리 농업분야는 농가 인력의 초고령화 인력의 은퇴와 후계 인력의 진입, 성장작물로의 재배 작물 변경, 기술화와 자동화의 도입, 생산 및 판매 구조의 개선과 같은 과제를 안게 됐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 생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1970년 25.50%에서 2015년 2.09% 로 급격히 감소한데 비해 농업 취업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는 1970년 49.50%에서 2015년 5.19%로 완만해, 생산에 비해 취업인력이 많은 인력과잉 상태다(김정호, 2007). 더욱이 전직이 어려운 40대 후반 인력이 농업분야에 남게 되면서 빠른 고령화로 유효 노동 인력이 적고 경쟁력이 취약한 고령의 인력구조다. 2010년 이미 60세 이상 농업 경영주가 전체의 60%였고 이중 70세 이상의 농업 경영주도

6) Yin (2008)의 사례연구방법론 참조

32%에 달한다(노재선, 2014).

〈표 1〉 연도 별 농업의 GDP 비중과 취업자 비중

	'70	'80	'90	'00	'10	'15
농업의 GDP 비중	25.50%	13.80%	7.80%	2.90%	2.24%	2.09%
농업의 취업자 비중	49.50%	32.40%	17.10%	7.60%	6.57%	5.1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경제활동 인구 원자료에서 계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1980년대 이후 주식작물인 쌀 소비가 현격히 줄고 과일, 채소, 축산의 소비가 늘었다. 이에 따라, 영농형태를 빠르게 변화시킨 40대 경영주와 그렇지 못했던 70대 이상 고령 경영주 간에는 소득 격차가 생겼다. 여기에 2000년대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으로 농업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했고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해 농가 소득을 양극화하는 동시에 정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정호, 2007; 노재선, 2014).

1990년 들어 영농 경영형태가 기존의 가족농 중심에서 탈피하기 시작했다. 2007년 말 6,473개였던 농어업법인 수는 2014년 말 17,585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법인이 전체 57.5%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농업의 경영형태는 영세한 수준이다(통계청, 2007:2014).

2. 농산업화와 계약생산

1990년대부터 활성화된 농산업화(agroindustrialization)는 농업분야 과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농산업화란 농경영기업(agribusiness firms)이 농가공, 유통, 영농투입재 등의 농지 외 활동을 성장시키고, 농기업과 농가 간 관계의 제도적 조직적 구조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농업 생산물 품목 구성, 기술, 및 산업과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Readon and Barret, 2000). Readon and Barret (2000)은 농경제학과 농경영학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농산업화와 세계화 및 농업 발전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 농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넓은 경지면적과 풍부한 부존자원을 기반한 전통적인 선진 농업방식은 경지면적과 부존자원의 한계를 넘어 경영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또한 유니레버, 델몬트, 코카콜라, 네슬레, 맥도널드, 월마트 등 다국적 농경영기업의 등장으로 농업 생산에서 가공,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은 빠르게 세계화 됐다. 저지들은 이러한 농산업화의 진전에 중요한 요인이 농업분야의 자유화, 제도적 또는 조직적 구조의

설립, 농업신기술의 전파라고 정리했다(Readon and Barret, 2000).

Wang, Wang et al. (2014)은 앞선 논의에서 농업분야의 제도적 또는 조직적 구조에 해당하는 계약생산이 농산업화를 앞당기는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계약생산에 대한 다수의 실증 연구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계약생산이 농업분야 생산과 유통 효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농가의 복지향상에도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어 농산업화로의 진전에 기여한다고 주장 한다.

FAO (2016)은 계약생산 사례와 결과를 사례연구 방법으로 정리하면서 계약생산의 정의와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계약생산은 구매자인 농경영기업과 농가 간 합의에 바탕을 두고 특정 수량, 품질, 가격, 납기에 따른 농산물의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농가는 농산물을 납품하고 구매자는 합의된 조건에 따라 생산된 농산물 전량을 구매한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농경영기업은 생산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고 효율적인 생산과 판매 및 수출 간 분업이 이뤄진다. 지역농가와외의 계약생산을 통해 농경영기업은 생산 비용절감을, 계약농가는 세계시장으로 시장접근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계약생산은 기업의 농산업화를 농가의 부가가치와 소득을 높이는 활동과 연결시켜 농업분야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역할 하도록 한다.

3. 농산업화와 FTA 활용

FTA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국경 통과비용을 감소시켜 농경영기업이 농산업화 과정에서 해외로 진출할 유인을 갖게 한다(Diaz-Bonilla and Reza, 2000; Readon and Barret, 2000). 이 외에도 FTA에 대한 연구에서는 FTA가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 간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 촉진을 통해 투자의 유입, 신기술의 발전과 확산,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동태적 효과를 통해 특정 산업의 과제해결을 촉진한다고 설명한다(Baldwin and Low 2009).

FTA와 농업분야에 관한 연구는 농업분야 자유화가 특정국가의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왔다(Josling, 1993; Levy and Van Wijnbergen 1994). 이러한 연구에서는 농업분야 자유화로 인한 무역창출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됐다. 그러나 FTA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서 FTA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농업분야에서 저조한 수출에 대해 농경영학 분야연구에서 일부 언급됐다.

Acharya (2003)는 수출을 포함한 농업분야 마케팅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농업분야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으로의 유인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설

명한다. 농업분야는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의 확보, 국민 보건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갖는 특수한 산업이다.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에서의 수요와 공급, 또는 경쟁의 논리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여러 비관세장벽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체계를 갖춰야 하며 수출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농가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비용이며 이에 따라 수출시장은 국내시장에 비해 노력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인식되고 있다.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FTA 활용이 낮은 이유가 체결국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절차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Brenton and Manchin 2003; Estevadeordal and Suominen 2004). 원산지증명절차는 품목분류나 제조원가와 같은 전문지식을 요하고, 많은 근거 증빙서류를 관리, 보관해야 해서 이 비용⁷⁾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FTA와 일부 산업에서 활용이 낮다는 것이다(Bhagwati, Greenaway et al. 1998). 그러나 농업분야 원산지증명절차가 농산물 관련 인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간소화됐기 때문에 FTA 활용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원산지증명 절차의 복잡함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이 보다는 Acharya(2003)와 Agri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Department(1997)의 연구를 종합할 때 농업분야의 FTA 활용이 낮은 것은 농산물의 수출 자체가 수익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농가에서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이 저자들은 농업분야의 농산업화에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고 집중적인 수출시장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농경영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들 기업들과 농가 간의 연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분야의 과제를 정리하고 해결책으로서 농산업화와 계약생산을 정의해보았다. 또, 여기에 FTA의 영향과 활용의 문제에 대해 살펴봤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러한 주제들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앞서 제기된 이론을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틀을 구성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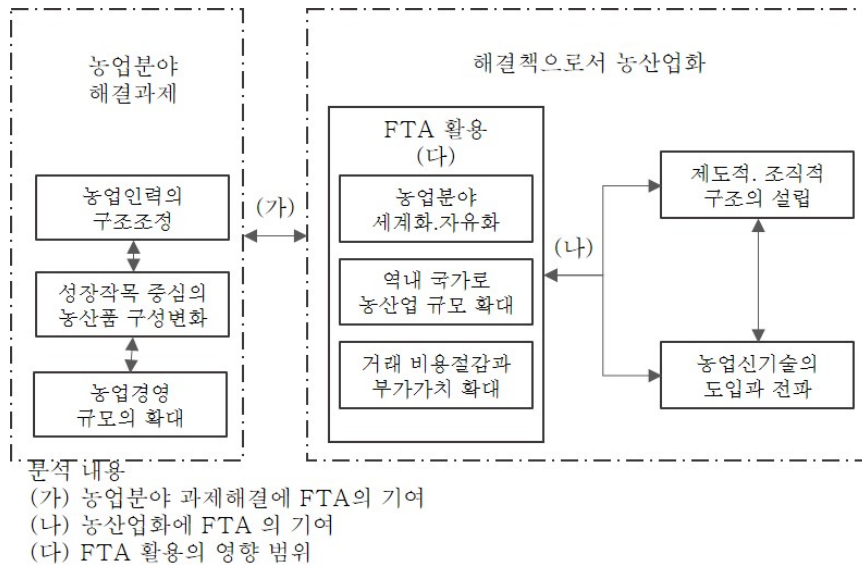
7) FTA 활용을 위한 비용은 원산지관리를 위한 시간과 시간 당 노임 평균을 곱해 계산 한다 (Yi 2015)

III. 연구방법

1. 이론적 분석틀

Readon and Barret (2000)은 농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농업분야의 해결과제와 농산업화는 서로 상호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우리 농업의 과제해결에도 적용 가능하다.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을 위해서는 농산업화를 통한 농업분야의 부가가치의 확대가 필요하고, 성장작목 중심의 농산품 구성 변화를 위해서는 자본과 경영기법, 농업신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며,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국경 간 농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분야의 해결과제와 농산업화에 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이론적 분석틀을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1> 이론적 분석틀



분석틀의 왼쪽 상자에서는 농업분야의 해결과제를 오른쪽 상자에서는 해결책으로서의 농산업화의 각 요소를 구성했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림 1>의 이론적 분석틀의 (가)에서는 농업분야 해결과제에 FTA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 볼 것이다.

오른쪽 상자는 농산업화의 구성 요소들 간 상호작용을 보여 주는데, (나)에서는 농산업화의 다른 요소에 대한 FTA의 역할을 파악하고, (다)에서는 FTA의 농산업화에 대한 영향 범위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2. 연구 설계

이 글은 전형적 사례를 분석하는 단일 사례분석 방식을 채택한다. 이 글은 농업분야의 과제해결과 농산업화에 FTA가 기여하는 바와 FTA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는 탐색적 연구로, 실제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정책적 함의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기술이 필요해 이 방법을 택했다. 추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가 있는 연구 성과에 대해 다중사례연구나 실증 연구를 통해 일반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위해 Reardon and Barrett (2000)의 세계화, 농산업화 및 발전에 대한 이론적 명제를 FTA에 대한 지역주의 이론을 결합해서 사용한다. 사례로는 제주도 농가와 뉴질랜드 다국적 키워⁸⁾유통업체 ‘제스프리 인터내셔널(ZESPRI International Limited, 이하 제스프리 사)’ 간의 계약생산을 선정했다. 2000년부터 제스프리 사는 키워가 출하되지 않는 단경기에도⁹⁾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북반구 국가에서 계약생산을 시작했다. 이 일환으로 이뤄진 제주 농가와의 계약생산은 2004년 성사돼 지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성취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의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 글은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넓은 안목에서 사례에 접근하고자 한다. 우선 기초 선행연구 검토와 문헌조사를 통해 사례와 관련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사안의 전개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 기사를 분석했다. 깊이 있는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부분은 기업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에 바탕을 두고 자료를 검증했다. 관련 협정, 국내법령, 통계, 정책 분석자료와 보고서 등도 수집, 분석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례의 농산업화와 계약생산의 경과 및 현황, FT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했다. FTA활용 요인분석을 위해서 <그림 1>의 이론적 분석틀에서 제시된

8) 키워 (Kiwifruit, 참다래) - 중국 원산지 다투나무과 낙엽덩굴식물. Chinese gooseberry로 불렸던 것을 뉴질랜드의 상업화 과정에서 뉴질랜드 새의 이름을 붙여 키워로 불리게 됨. 이 글에서는 키워로 통칭 (두산백과 2017; Zespri 2017).

9) 단경기(端境期). 키워는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남반구에서는 3월에서 11월 (뉴질랜드는 4월에서 11월), 북반구의 경우 9월에서 4월에만 출하되고 나머지 단경기 동안에는 키워의 출하가 되지 않는다(장영진, 2013)

FTA 영향이 경험적으로 관찰된 패턴과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패턴매칭’ 을 사용해 분석했고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유도했다. 이 방법을 사용해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Yin, 2008), 특히 사례가 농산업화 과정에서 얻은 성취와 추가적인 농산업화의 진전을 위한 장애 극복을 위한 조치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시행했다.

IV. 연구결과

1. 사례 분석

1) 제스프리사의 농산업화

〈표 2〉 지역 별 키위 생산량 변화 (1984 - 2014)*

(단위 : K Ton, %)

생산지역	1984*	1994*	2004*	2014*
전세계	146,793 (100.0)	928,010 (100.0)	2,253,062 (100.0)	3,447,572 (100.0)
아시아	- (0.0)	65,748 (7.1)	1,183,745 (52.5)	1,959,718 (56.8)
유럽	39,952 (27.2)	485,212 (52.3)	587,912 (26.1)	780,968 (22.7)
오세아니아	90,311 (61.5)	225,500 (24.3)	312,023 (13.8)	414,985 (12.0)
미주	16,530 (11.3)	151,550 (16.3)	169,382 (7.5)	291,901 (8.5)

자료 : FAOSTAT (2017) <http://www.fao.org/faostat/> 원자료에서 재구성

* ()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표 2〉는 지난 40년 간 세계 키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1984년 14만 7천여 톤이던 생산량은 2014년 344만 8천 여 톤으로 약 23배 넘게 증가했다. 지역 별 생산 판도도 변해, 1980년대 60%를 넘었던 오세아니아의 생산 비중은 2014년 12%로 감소하고, 생산량이 없던 아시아에서 전 세계 키위 생산량의 57%에 달하는 196만 여 톤을 생산하게 됐다.

뉴질랜드 키위산업은 농업분야 세계화와 산업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뉴질랜드는

1904년 중국에서 키위 종자를 처음 도입해 최초로 상업적 재배를 시작했고 1976년에는 수출이 국내 판매를 초과했다(김병률, 이명기 et al. 2009). 1980년대 말 키위 생산의 세계적 급증과 뉴질랜드 농가 간 경쟁으로 키위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들 간 협회를 기반으로 수출과 해외 유통, 마케팅 체제화를 담당할 제스프리 사를 1997년 설립했다(Zespri Group Ltd. 2017).

제스프리 사는 HortResearch라는 뉴질랜드 정부산하 연구소에서 Green, Organic, Sweat Green, Sun Gold, Gold의 5가지 품종을 개발하는 등 신기술을 꾸준히 도입했고 수출판매를 위한 공급망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을 운영해 수출지역 별 정확한 수요 예측과 공급을 해왔다(Beverland 2001). 2013년 키위 산업은 뉴질랜드의 1차 산업 중 가장 높은 헥타르 당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헥타르 당 생산량을 보인다. 뉴질랜드 키위 생산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수출의 98%가 제스프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Zespri Group Ltd. 2017).

〈표 3〉 2014년 국가 별 키위 생산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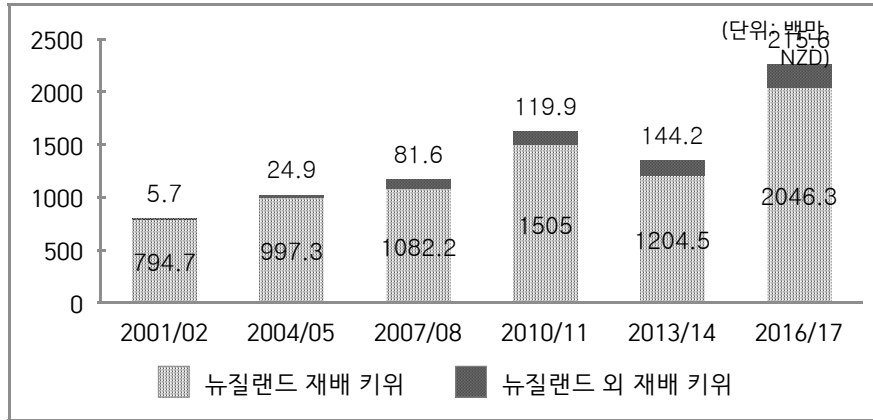
순위	국가	경작지면적 (ha)	생산량 (K Tonnes)	단위면적 당 생산량 (K Tonnes/ha)
1	중국	145,000	1,840,000	12.7
2	이태리	24,828	506,958	20.4
3	뉴질랜드	12,081	410,746	34.0
4	칠레	10,632	266,017	25.0
5	그리스	7,880	171,510	21.8
9	일본	2,150	31,600	14.7
13	한국	580	9,158	15.8

자료 : FAOSTAT (2017) <http://www.fao.org/faostat/> 원자료에서 재구성

2) 제주농가와 제스프리 사 간 계약생산

2000년부터 제스프리 사는 북반구에서 계약생산을 도모했다. 경쟁국들의 생산이 증가되면서 키위 가격을 낮추고 키위 연중 공급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글로벌 브랜드화와 경쟁우위에 중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Beverland 2001; Zespri Group Ltd. 2004). 제스프리 사는 이태리,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에 지사를 세우고 지역 농가와 계약을 통해 남반구에서 키위가 재배되지 않는 단정기에 생산을 시작했고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질랜드 외 지역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2〉 2001년 - 2016년 제스프리 재배 지역 별 매출액*



자료 : Zespri Group Ltd. (2004; 2008; 2013; 2017) Annual Report 원자료에서 재구성

제스프리 사가 계약생산을 진행해 나가던 시기 한-칠레 FT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제주 농가는 FTA로 감귤 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체 작물로의 전환이 시급했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현재 서귀포시)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약생산이 성사됐다. 100ha 정도의 계약면적을 대상으로 133¹⁰⁾ 농가와 이뤄진 계약으로 제스프리 사는 연중 키위를 판매가 가능하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이점이 있었고 제주 농가는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 받아들여졌다¹¹⁾(장영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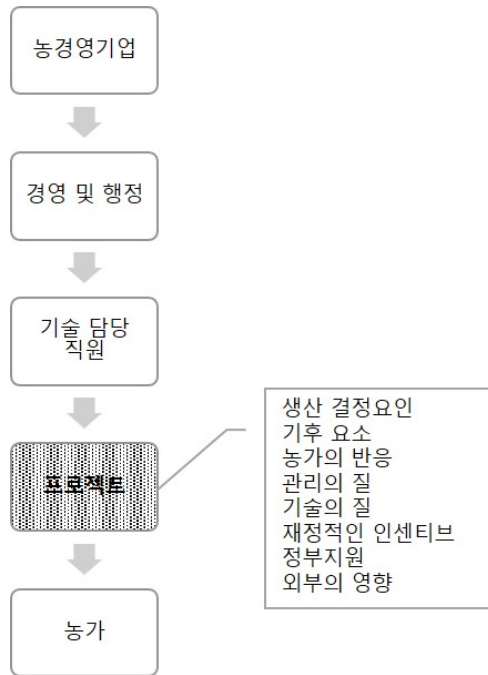
계약생산은 제스프리 사가 묘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농가는 판매, 영업, 마케팅 및 기술지원, 그리고 특허된 묘목의 사용 대가로 농가는 매출의 15%를 제스프리 사에 지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농가는 계약에 따른 키위의 재배와 공급을 하고 제스프리 사는 최적의 생산정보와 병충해 방제, 관개 및 수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¹²⁾와 생산자 지원 서비스 팀을 운영한다(Zespri Group Ltd, 2017). 제주지사에도 상주 직원을 배치해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교육을 하고 선과장(packhouse)에서의 검사, 선별, 포장, 유통절차 관리와 출고 지시 및 마케팅을 한다.

10) 제주 농가와 제스프리 사 간의 계약은 순차적으로 이뤄져 시기에 따라 대상 농가 수에 차이가 있다. 133 농가는 2006년 최초 출하 시 공개 자료다. 기업관계자 인터뷰에서 2017년 현재 총 147 농가가 계약에 참여 중이다. 참여 농가의 구체적인 변화는 〈표 4〉 참조.

11) 2000년부터 시작된 제스프리 사의 계약생산은 제한적인 규모로 이뤄졌다. 자국인 뉴질랜드에는 2,700 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에 500호, 프랑스에 100호, 일본에 500호, 현재 한국에 130 여 호의 농가가 100 ha 농지에 대해 계약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자국 외 생산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Zespri Group Ltd, 2017; 이제경 2007).

12) 제스프리 캐노피 웹사이트 (Zespri Canopy Website) 참조

〈그림 3〉 중앙집중식 모델 계약생산



자료 : Eaton and Shepherd (2001) Contract farming: partnership for growth p.63

제주 제스프리 키위 계약재배는 기업이 다수의 농가와 계약해 가공 및 포장 그리고 마케팅을 하는 〈그림 3〉과 같은 중앙집중모델 이다¹³⁾. 이 모델도 계약형태를 농산물을 종류, 기업의 목표와 자원, 그리고 농가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Eaton and Shepherd 2001). 제주 농가들은 20년 넘는 그린 키위 재배 경험이 있고 요소시장이 성숙돼 있어 농가가 영농투입재와 시설 투자 및 생산과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유지하는 계약 방식이 적용됐다.

13) Eaton and Shepherd (2001)에서는 계약생산의 형태를 기업의 개입 방식에 따라 크게 5개로 나눴다. 기업이 다수 농가의 생산을 관장하는 중앙집중모델(centralized model), 기업이 시범 재배를 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 농가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핵심단지모델(nucleus estate model),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다수의 조직이 구매자로 참여하는 다중화 모델(multipartite model), 중소 규모의 개인이나 회사가 계절 단위로 계약생산을 하는 임시모델(informal model), 그리고 식품가공업체나 기업이 다수 농가로 이뤄진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중간모델(intermediary model)로 나눈다.

〈표 4〉 제주 농가와 제스프리 사 간 계약생산에 대한 매체보도

보도 시기 / 보도 매체	내용
2003년 10월 세계일보, 연합뉴스, 동아일보, 한겨레	<p>제스프리 인터내셔널과 남제주군 간 골드키위 계약생산 업무 의향서 조인식 남제주군 - 고품질 골드키위 품종보호 및 생산 시설지원과 생산자 관리 제스프리사 - 특허 묘목 지원, 기술제공. 교육, 마케팅, 및 유통, 판매 재배면적 - 50ha (15만평)으로 시작 점차 100ha (30만평)으로 확장 본격적인 수확 - 평균3~5년 뒤 수확량 예측 - 1ha당20.8t 예상 농가소득- 현 도매가(1트레이 당 3만원) 기준 1ha 당 연간 5천만 원</p>
2004년 2월 뉴시스	<p>골드키위 본격 재배 남제주군 - 46농가 36.2ha 재배면적에 입식 묘목 반입, 묘목식재 교육, 농가 분양 2007년부터 수확 가능. 첫해 수확량 760톤 예상</p>
2004년 5월 연합뉴스	<p>골드키위 재배지 80ha로 확대 약 50ha 추가 식재를 위한 농가 선정 - 시설재배농가 대상</p>
2005년 4월 연합뉴스	<p>골드키위 재배지 100ha까지 추가 확대 이미 조성된 61ha에 이어 39ha에 대한 재배 희망 농가 선정</p>
2005년 8월 연합뉴스	<p>골드키위 첫 결실 (시범수확) 남제주군 표선면 비닐하우스 골드키위 10그루. 노지 재배 키위에 비해 병충해, 강우피해 예방. 경영비도 절감. 골드키위 재배현황 총 102 농가 60ha에 묘목 보급 100ha로 재배지 확대를 위해 175 농가 모두 선정</p>
2005년 11월 연합뉴스	<p>골드키위 첫 수확, 품질평가 2010년 180억 수익 기대</p>
2006년 10월 뉴시스 제주일보	<p>수확을 앞두고 선과장(packhouse), 유통센터 설치 두고 갈등 재배지 - 133농가 100ha 골드키위 생산 첫 출하량 - 약 700톤으로 전망 갈등의 원인 - 1)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유통센터"건립지역 미확정 2) 전남 해남 또는 경기 오산지역 유력 후보지로 거론 제스프리 사 - 유통센터를 육지부에 조성할 움직임 3) 농가 - 키위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제주지역 설치 주장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남제주군 사업 외면</p>
2006년 11월 뉴시스	<p>농가 자체 투자로 유통센터 제주 유치 제주감협 (남원읍 신흥리 소재 감협 제2 유통센터)유통센터로 지정 골드키위영농조합을 중심으로 농가들이 선과기를 직접구입, 설치한 후 가동하기로 제스프리 사와 합의</p>
2006년 11월 연합뉴스	<p>제주 골드키위 시범 수확 뒤 첫 판매 2004년 3월 보급한 것, 30ha에서 700여 톤 생산될 것 2010년 이후 본격적 생산 - 4천 500t 이상 생산돼, 전체 130 여 재배농가 조수입 - 140 억원으로 전망</p>

2007년 11월 KCTV 뉴스 동아일보	제주 골드키위 본격 수확 작년 30ha에서 470톤을 생산, 판매해 23억원의 수입 제주의 특산품인 한라봉에 비해 1.8배 높은 소득 올해 60ha에서 2천톤 가량 생산, 80억원의 수입 기대
2008년 2월 동아일보	제주 농가 제스프리 종자에 대한 로열티 첫 지급 40억원 안팎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
2011년 1월 농민일보	제주 골드키위에서 궤양병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2,000평의 재배면적 중 700평의 키위 나무를 잘라냄.
2011년 6월	제주 골드키위 132억 소득 창출 150여 농가, 총 132억원 소득 창출
2015년 1월 연합뉴스	제주 골드키위 해외수출 시작 약 8톤, 싱가포르로 수출
2015년 12월 아시아경제	제주 골드키위 수출 약 8톤, 싱가포르로 수출
2016년 12월 파이낸셜뉴스	제주 골드키위 3년 연속 수출 약 8톤, 싱가포르로 수출

자료 : 네이버 뉴스 검색. 검색어 제주 제스프리, 키위. 원자료에서 시기 순 재구성

〈표 4〉은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주 농가와 제스프리 사 간의 계약생산의 전개를 보여준다. 제스프리 사는 2003년 남제주군과의 업무의향서 조인 후 2005년 말까지 재배면적을 100ha로 확장했다. 농가들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했고 2006년 말 30ha에서 40톤 첫 수확돼 약 23억 원의 수입을 얻었고, 2010년 이후 수확이 본격화 돼 매년 4,500여 톤 생산과 약 130여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말까지 3회에 걸쳐 싱가포르로 8톤 정도 수출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참여 농가는 예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입을 얻게 됐다.

이 사례는 여러 계기를 통해 농업분야의 제도적 조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 2006년 첫 수확을 앞두고 남제주군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과 함께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저온저장, 선과, 포장 및 운송을 담당하는 유통센터에 대한 선정과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갈등은 좋은 예다. 제스프리 사는 전남, 해남, 또는 경기 오산에 유통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던 반면 제주 농가들은 제주 지방의 고용 및 발전과 재배 후 공급관리의 편익을 위해 제주 내 유치를 원했다. 정부의 중재가 없는 가운데 제스프리 사의 양보와 제주 농가의 유통센터에 대한 자체 투자 결정으로 제주 지역 유치를 결정하면서 이 갈등은 해소됐다 (임성준 2006; 정홍남 2006). 이 사건을 통해 계약생산에서 정부의 역할, 농가의 자율권과 경험, 요소시장 및 농업 유통 인프라의 발달이 계약생산의 진전에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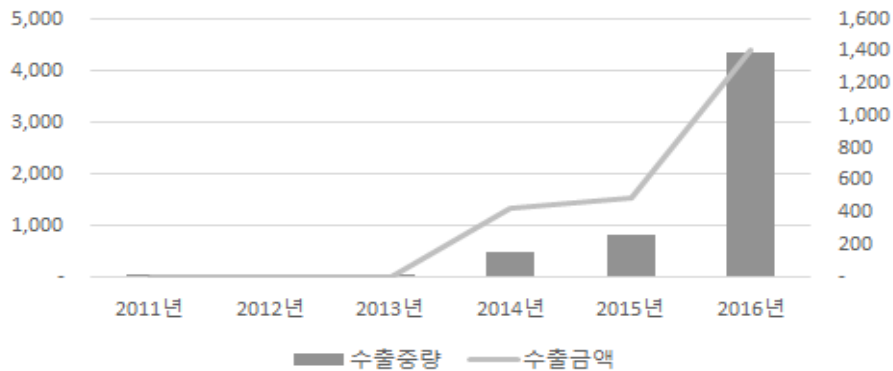
2008년 제스프리 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첫 지급도 농업분야에 큰 학습의 기회였

다.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제스프리 사의 높은 품질에 대한 견제와 이 지급액이 단지 특허료로 잘못 알려지면서¹⁴⁾ 그에 대한 반감은 오히려 국내 농가들이 자체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황색 과육인 제시골드, 한라골드, 해금, 녹색과육인 제시그린, 제시스위트, 보옥, 야생 다래계통의 스키니 그린, 청산 등 자체 종자이 개발이 활발해 졌고 제주 뿐 아니라 전남, 경남, 강원지역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홍동수 2008).

제스프리 사와의 경쟁은 계약에서 배제된 농가들의 자체적인 조직화도 유도했다. 자구책을 찾기 위해 2008년 계약에서 배제된 농가들은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을 창립, 발전시켜 2016년 제주 관내 500여 농가 중 200여 농가가 이 조합에 참여 중이다. 공동 선과와 유통, 마케팅을 시도했고 생산량을 늘려 2015년부터는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출까지 시도해 2016년 전체 매출의 30%가 수출에서 나왔다 (김경욱 2017). 이에 따라 <그림 4>와 같이 전무했던 전체 키위 수출액도 2014년부터 증가해 2016년 440만 불이 됐다.

<그림 4> 연도 별 키위 수출 증가

(단위 : 톤, 천불)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계 (2017) 품목별 수출입통계, 원자료에서 재구성

그러나 아쉽게도 제주 농가와 제스프리 사 간 계약생산은 농산업화에 대한 직, 간접적인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첫 계약 후 계약 재배면적의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제스프리 사는 키위에 대한 시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것과 아시아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높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다(안상희 2014). 또한 제주도의 비닐하우스재배 방식이 갖는 생산 및 아

14) 매체 상에 특허에 대한 로열티로 보도된 이 지급액은 정확히는 제스프리 사가 제공한 판매, 영업, 마케팅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다.

시아 수출기지로서의 장점도 강조돼 왔다(홍동수 2005). 2015년 체결된 한-뉴질랜드 FTA와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맺은 FTA에 대한 제스프리 사의 기대도 있다(김병수 2011). 그러나 계약이 한창 진전되던 시기 정부가 손을 떼면서 계약 확장을 중개하거나 계약농가들 간 경쟁이나 계약의 불이행과 위반, 계약에서 배제된 농가들의 극심한 견제를 조정하는 역할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확장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2. 농산업화를 위한 FTA활용 요인 분석

농산업화를 위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요인에는 <그림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분야의 FTA와 같은 자유화, 역내 국가로 농산업의 규모의 확대, 이를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과 농업의 부가가치의 확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예를 들어 농업의 신기술의 도입과 전파가 이뤄져야 실질적인 비용의 절감과 부가가치의 확대가 가능한 것과 같이 FTA 활용 이외의 농산업화의 다른 요인들과 상호 작용한다. 계약생산은 농업분야에 제도적, 조직적 구조를 설립한 대표적인 형태로(Readon and Barrett, 2000), 이 계약생산 즉, 농업분야의 조직 설립은 다른 요인들을 추진하는 구심점이 된다는 점에서 농산업화의 핵심이다. 다음에서는 이 글의 계약생산 사례를 바탕으로 농산업화의 각 요소 중 조직적 구조의 설립과 FTA 활용이 농업분야 과제해결에 기여하는 점을 살펴보고, 조직적 구조가 FTA 활용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농업분야 FTA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FTA가 농업분야 과제해결에 미친 영향

이 사례는 Reardon and Barrett (2000)의 주장과 같이 FTA가 경쟁을 심화시켜 농업분야의 구조조정과 역량강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는 제주 농가와 제스프리 사 간의 계약생산이 성사 후 유지되는데 역할을 했다. 칠레는 뉴질랜드 다음의 키위 생산국이며 남반구에 위치해 뉴질랜드와 출하시기가 겹치는 직접적인 경쟁상대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키위 수출에서 약 7%를 차지하는 5위 수출국이고 아시아에서 중국¹⁵⁾, 일본 다음 큰 수출국이지만, 4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한-칠레 FTA가 칠레산 키위 가격을 인하해 이 시장에서 경쟁에서 뉴질랜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한-칠레 FTA를 통한 키위에 대한 자유화는 제주 농가는 물론 국

15) 홍콩, 대만, 마카오 포함

내 진출한 다국적기업에도 경쟁의 계기가 되고, 다국적기업이 자사의 시장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농업분야의 과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진행하도록 촉진한 것이다.

〈표 5〉 2013년 아시아 지역 키위 수입국 순위

순위	국가	금액 (단위: 천불)
1	중국 (전체 누적)*	215,916
2	일본	209,782
3	중국 본토	121,626
4	중국, 대만	61,687
5	한국	43,473
6	중국, 홍콩	32,168
7	싱가포르	11,738
8	말레이시아	10,596
9	인도	9,395
10	인도네시아	9,117

자료 : FAOSTAT(<http://www.fao.org/faostat/>). 원자료에서 재구성

*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마카오 포함

이 사례에 〈그림 1〉의 이론적 분석틀을 적용해보면 FTA가 농산업화와 농업분야 과제 해결에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그림 1〉 (가)의 영향을 분석하자면, FTA에 의해 촉발된 경쟁이 제스프리사와 우리 농가 간 협력의 계기가 됐고 농산업화에 파급 효과를 통해 농업분야의 과제해결에 기여했다 할 수 있다. 기술분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업의 전문적인 수요예측과 마케팅은 농가들이 기존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유통센터를 유지해낼 여력과 젊은 신규인력이 농가의 후계자로 진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됐다. 제주 감귤농가의 대체 작물로 전환이 이뤄졌고, 국내 시장을 넘어 수출까지 하여 시장범위와 농업경영 규모를 확대했다.

〈그림 1〉 (나)에서 FTA가 농업분야 제도적 구조적 조직화에 대한 기여도 이 사례에서 충분히 증명됐다. FTA가 촉발한 경쟁은 제스프리사와의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의 조직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농산업화에도 기여했다고 하겠다. 기술분석에서 언급된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대한 좋은 예다. 〈그림 1〉 (나)의 농업신기술의 개

발과 도입에의 영향도 명백하다. 제스프리 사와 계약 농가들은 계약생산의 제도 안에서 새로운 농경영기술과 생산기술을 전수 받았고, 계약생산에서 배제된 농가들은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자체 기술을 개발, 확산시켰다.

그러나 <그림 1> (다)에서 FTA 활용 자체의 영향은 이 사례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FTA로 이 사례에서 세계화와 부가가치의 상승은 있었지만, FTA 활용에 따른 거래비용의 절감효과는 제한적으로 일어났다. 2015년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로 뉴질랜드 산 키위의 수입에서 약 672만 불의 관세절감에 따른 비용절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⁶⁾¹⁷⁾. 그러나 우리 농가의 FTA 특혜 수혜와 수출을 통한 농업 규모의 확대는 제한적이었다. 2015년부터 이뤄진 제주 생산 제스프리 키위의 수출은 싱가포르로 이뤄졌으나 수출물량은 연간 8톤 정도로 미미하다. 제스프리와의 계약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의 수출도 물량이 적고, 수출 대상국 중 일본, 홍콩은 FTA 체결 대상국이 아니고, 말레이시아는 한-아세안 FTA가 적용되지만 이 FTA의 농산물에 대한 활용율이 49.7%로 절반이 되지 않아 영향이 무척 제한돼 있다.

요약하자면 FTA는 농업분야의 과제해결과 농산업화에 기여를 했다. 또한 FTA는 농산업화를 위한 농업분야의 제도적 조직화와 기술개발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그 기여와 영향은 FTA를 실제로 활용하여 농산업의 규모를 국내 시장을 넘어 역내 국가로 확대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FTA를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도 충분치 않다. 이에 따라 FTA의 기여는 아직 연간 천억 정도에 그치는 한정적인 국내 시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농산업화에 FTA 활용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기술분석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FTA로 격화된 경쟁에서 정부의 중재와 조정 역할 없이 계약생산과 같은 사례를 꾸준히 진전시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Eaton and Shepherd (2001)와 UNIDROIT, FAO et al. (2015)의 주장을 바탕으로 농산업화를 위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계약생산을 저해하는 법, 규제, 관료주의를 최소화하여 농산업화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분야의 무역장벽의 완화에서 우리 정부는 큰 진전을

16) 한-뉴질랜드 FTA는 한-칠레 FTA 보다 빠른 6년 균등 철폐 방식을 택해 2017년 현재 22.5%의 관세가 적용되고 2020년부터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 2016년 한해 한-뉴질랜드 FTA의 수입 활용률은 87.3%, 관세 양허가 15%, 뉴질랜드에서 키위 수입액 5,131만 불(관세청 2017)이었음을 고려해 계산된 수치

17) 한-칠레 FTA는 키위에 대해 10년 균등철폐로 진행돼 2014년 관세 철폐됨.

이뤄왔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한-인도 CEPA에 따라 키위를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 2017년 인도 기본세율 30%가 18%로 양허되고, 한-아세안 FTA에 따라 말레이시아 수출의 경우 15% 관세가, 인도네시아의 경우 5%의 관세가 전부 면제 된다 (관세청 2017 ; WTO Tariff Analysis Online 2017).

하지만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지원을 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원산지절차와 관련해 Estevadeordal and Suominen (2004)과 Brenton and Manchin (2003)이 지적한 것과 같이, 원산지규정이 엄격하고¹⁸⁾ 복잡하면 FTA 활용은 떨어진다. 제조업과 달리¹⁹⁾ 농산물의 거래에서는 원산지를 증명할 서류가 없거나, 유통경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추적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이 때문에 농업분야의 원산지관리는 고비용을²⁰⁾ 소요하고 FTA를 활용할 유인도 적다. 따라서 FTA 활용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 거래관행과 유통절차, 발급 서류를 파악하고 체계화하여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을 통해 FTA 활용 비용을 낮춰야 할 것이다 (이지수, 2016).

또한, 농업분야의 낮은 FTA 활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히 원산지절차의 복잡함을 뛰어 넘는 이유에 기인하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 포장과 유통비용 등과 같은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FTA 체결하는데 있어 식품검역, 환경, 기술 등 보다 넓은 분야에 대한 깊은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의 물류와 유통과 관련된 협력, 농업 기술이전과 특허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FTA 체결과 이행을 위해 노력도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또한 농업분야의 제도적, 구조적 조직화가 평등하고, 공평하며, 동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농업분야의 조직화에서 농기업과 농가 간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공평한 계약이 되거나, 농가가 비상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한다든지, 종묘에 대한 특허기술을 침해한다든지, 기업이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과 수매를 미루는 일이 발생하면 계약생산은 실패한다. 세계적으로 계약생산이 활성화되면서 계약 조항의 구성을 모델화하고 계약 불이행을 중재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UNIDROIT, FAO et al. 2015). 계약생산의 현황과 계약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 농업분야의 현실에 맞는 모델 계약의 구성, 분쟁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분쟁조정절차를 갖추어야 가야한다. 또한 FTA 특혜 원산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도 갖춰야 FTA를 위한 체계 확립이 가능하다.

셋째, 정부는 농업분야에서의 품목별 조직화를 주선하고, 관련된 연구와 개발, 교육,

18) 보통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완전생산기준. 농산물이 체결국에서 온전히 자라고 수확되어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다른 원산지 물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유통되어야 한다.

19) 원재료명세서(Bills of Materials)와 거래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20) FTA 활용을 위한 비용은 원산지관리를 위한 시간과 시간 당 노임 평균을 곱해 계산 한다 (Yi 2015)

유통 인프라를 제공하여 농산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FTA로 인해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 품목별로 계약생산의 환경이 다르므로 품목별 조직화를 위해 관심 기업과 농가의 계약을 주선하고, 품목의 상품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유통과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개발, 교육을 이행하며, 미흡한 선과, 보관, 운송과 관련된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농업분야에서 FTA를 활용할 유인을 제공하고 활용 환경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FTA 활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3) 농업분야 FTA 활용 지원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의 사례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FTA 활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정부는 FTA가 갖는 정태적 효과와 동시에 동태적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한다. 단지 농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높이는 일과 같이 FTA의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고 FTA 활용율을 높이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농가의 구조조정과 역량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의 일환으로 FTA 활용을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Eaton and Shepherd (2001)가 주장하듯이 정부의 역할은 주도적인 개입이 아니라 행정적, 법적, 환경적인 체제와 기반을 구축하는데 멈춰야 한다. 농산업화와 계약생산은 궁극적으로 농업분야에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정부나 NGO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의 주체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상업적 목적을 갖는 민간 기업과 농민이 직접 나서서 시장과 수익창출 가능성, 기술과 투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농산업화는 농업분야의 문제해결에 완전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며, 부수되는 다수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지원과 조치를 구상해야 한다. 농산물과 농식품에 적용되는 세계적인 품질표준을 충족하는 문제, 포장과 유통체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농경영기업과 농가 간의 건전한 관계를 확립하는 일, 농업생산에 적용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 영세농에게 기술을 전달하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일 등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의 파악과 해결은 농산업화가 지속적인 성장 모델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다.

V. 결 론

이 글에서는 우리 농업분야의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농산업화에 FTA가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파악하고, FTA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의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의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하는 것 외에도 농업분야 전반의 구조조정과 역량강화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농경영기업과 농가가 주도하는 농산업화가 이뤄지는데 있어서 정부는 농산업화의 행정적, 법적, 환경적 문제와 농산업화의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뒀야 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FTA활용에 대한 이론을 농산업화 분야까지 적용해 FTA 활용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실천적으로는 FTA의 기여를 활용도 이외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았다는데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 글은 농산업화와 FTA를 함께 살피는 탐색적인 연구로서 광범위한 내용을 짧은 지면에 담기 위해 농산업화의 각 요인에 대한 FTA의 개별적인 영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단일 사례연구로서 갖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다수 사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접근법을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연구에서는 계약생산의 이행에 있어서 농업분야 FTA 활용을 위해 증빙서류와 유통관련 서류를 체계화하는 방법이나 농업분야 FTA의 역내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세관 간,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과 같은 문제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2017).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 관세청·국제원산지정보원(2017). 한눈에 보는 2016 FTA 활용지도. 관세청,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p.75.
- 권오복(2005).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병률 외.(2009). 제스프리(ZESPRI)의 현황과 성공요인. 세계농업.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41-59.
- 김정호(2007).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토론회 결과,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마상진·최경환(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서울: 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2006). FTA·DDA협상 이후의 과수산업 발전전략.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제경(2007). 판매전문 업체, 브랜드 단일화 주효. 매일경제신문, 서울, 매일경제신문.
- 이지수(2016). “특혜원산지규정의 간소화에 대한 사례연구.” 「관세학회지」, 제17권 제2호, pp.71-91.
- 장영진(2013). “계약생산과 초국적 농식품 체계 : 제주도 제스프리 골드키위 농업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6권 제4호, pp.585-596.
- 정효진(2009). 한국수출 키워는 일부러 달걀만하게. 동아일보. 서울, 동아일보사.
- Baldwin, R. and P. Low(2009). Multilateralizing regionalism: challenges for the Global Trading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sch, L. and A. Juska(1997). “Beyond political economy: actor networks and the globalization of agriculture.”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 4 No. 4, pp.688-708.
- Cook, M. L. and F. R. Chaddad(2000). “Agroindustrialization of the global agrifood economy: bridging development economics and agribusiness research,” *Agricultural economics*, Vol. 23 No. 3, pp.207-218.
- Daz Bonilla, E. and L. Reca(2000). “Trade and agro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rends and policy impacts.” *Agricultural economics*, Vol. 23 No. 3, pp.219-229.
- Eaton, C. and A. W. Shepherd(2001). Contract Farming - partnership for growth, Rome, FAO.,
- FAO (2016) Contract Farming: For Improved Access to Market and Resources. FAO

Publications 8

- Josling, T. E.(1993). "Agriculture in a world of trading blocs." Australia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Vol. 37 No. 3, pp.155-179.
- Levy, S. and S. Van Wijnbergen(1994). "Labor markets, migration and welfare Agriculture in the North-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3 No. 2, pp.263-278.
- Miriam, M.(2004). The Economic Effects of a Russia-EU FTA, Tinbergen Institute, 2004, No. TI 04-131/2.
- Reardon, T. and C. B. Barrett(2000). "Agroindustrialization,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n overview of issues, patterns, and determinants." Agricultural economics, Vol. 23 No. 3, pp.195-205.
- Silva, C. A. d. and M. Rankin(2013). Contract farming for inclusive market access. Synthesis and findings from selected international experiences. C. A. d. Silva and M. Rankin, Rome, FAO: 227.
- UNIDROIT, et al.(2015). Legal Guide on Contract Farming. UNIDROIT, FAO and IFAD. Rome.
- Urata, S. and K. Kiyota(2003). The impacts of an East Asia FTA on foreign trade in East Asi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Wang, H. H., et al.(2014). "The transition to modern agriculture: Contract farming in developing economi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96 No. 5, pp.1257-1271.
- Yi, J.(2015). "Rules of origin and the use of free trade agreements: a literature review." World Customs Journal, Vol. 9 No. 1, pp.43-58.
- Zespri Group Ltd.(2017). "Growing Zespri Kiwifruit." Retrieved October 4, 2017, from <http://www.zespri.com/storyofzespri/growing>.

The Agroindustrialization in the Era of Free Trade Agreements: A case of kiwi fruit contract farming

Ji-Soo Y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oles and effects of FTAs (Free Trade Agreements) in agroindustrialization, and to navigate its implication for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utilization of FTAs in the agriculture sector. The paper, in particular, is based on a case of contract farming, which has often referred as the key factor of agroindustrialization. By doing this, this paper has the importance academically in enhancing the study of FTA utilization to the study of agroindustrialization, and practically in exploring the implication for the FTA implementation policy that provides fundamental solutions to the issues of agriculture sector.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ighlighted that the role of government that intermediates, monitors, and controls the equal and the fair relationship between the agribusiness firms and farms is essential for the further progress of agroindustrialization under the keen competition created by FTAs.

(Key Words) Free Trade Agreement, Agroindustrialization, Contract Farming, FTA Utilization